

제41회 영주시의회(정기회)  
제 14 차 총 무 위 원 회  
'99. 12. 22 (수) 10:00

# 의 안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총 무 위 원 회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80

제출년월일 : 1999. //.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16,267호, '99.4.30)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협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공공시설의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을 명백히 함.  
(안 제6조)

나.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의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중 매각용도를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함.  
(안 제23조제4항제5호)

라.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안 제25조제2항)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25조제8항)

바. 잡종재산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선택의 종류를 부동산관리 선택·부동산처분선택 및 토지선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사. 시유재산 취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준용규정을 세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6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입법예고결과 1부.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제1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 제107조"로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매각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20조의2 중 “제100조 제2항 제5호”를 “제100조 제2항 제5호 · 제4항”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5퍼센트”를 “연 5퍼센트”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 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제1호중 “영 제95조제2항 제6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를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분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을 “광업, 채석”으로 하고,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며, 제6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로 하고,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 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중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로 하고, “10%이상”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6조의2중 “영 제92조의2”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로, “공장건설”을 “공장건설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임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로 하고, 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하며, 나목중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2호가목중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3호가목중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_____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공유재산 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정리”를 “대부정리부를 비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산업단지등”을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산업단지등”으로, “사업토지와 접한 경우”를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특별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각각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

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고려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사전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 건립하고,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서를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시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하고, “꾀할 수 있다”를 “도모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5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증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시 공유재산심의회) ① &lt;생 략&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u></li> <li>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사항</li> </ol> <p><u>&lt;신 설&gt;</u></p>	<p>제8조(시 공유재산심의회)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t;삭 제&gt;</li> </ol>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 &lt;삭 제&gt;</p>
<p>제15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볼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lt;생 략&gt;</li> <li>5. <u>손해보험증서 제출</u></li> <li>6. <u>사용허가 표지 부착</u></li> <li>7.~8. &lt;생 략&gt;</li> </ol>	<p>제15조(사용허가조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lt;현행과 같음&gt;</li> <li>5. &lt;삭 제&gt;</li> <li>6. &lt;삭 제&gt;</li> <li>7.~8. &lt;현행과 같음&gt;</li> </ol>
<p>제16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6조(사용허가부의 비치) <u>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u>-----.</p>
<p>제18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중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불용재산의 처분) ----- ----- ----- 매각처분 할 수 있다.----- ----- -----</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5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3. &lt;생 략&gt;</p> <p>4. <u>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구체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5. &lt;생 략&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2. &lt;생 략&gt;</p> <p>3.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③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연 5퍼센트-----</p> <p>1.~3. &lt;현행과 같음&gt;</p> <p>4. &lt;삭 제&gt;</p> <p>5. &lt;현행과 같음&gt;</p> <p>6. <u>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7.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②-----</p> <p>-----</p> <p>-----</p> <p>1. &lt;삭 제&gt;</p> <p>2. &lt;현행과 같음&gt;</p> <p>3. &lt;삭 제&gt;</p> <p>③-----</p> <p>-----</p> <p>-----</p>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
2.~4. <생 략> <u>&lt;신 설&gt;</u>	2.~4. <현행과 같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생 략>	④----- ----- ----- ----- -----.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4.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5.-----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 제2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사용 료의 요율----- ----- -----.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광업채석-----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증 가 율</th><th>대 부 료 인 상 율</th></tr> </thead> <tbody> <tr> <td>10% 이상</td><td>20% 미만</td></tr> <tr> <td>20% 이상</td><td>50% 미만</td></tr> <tr> <td>50% 이상</td><td>100% 미만</td></tr> <tr> <td>100% 이상</td><td>200% 미만</td></tr> <tr> <td>200% 이상</td><td>500% 미만</td></tr> <tr> <td>500% 이상</td><td></td></tr> </tbody> </table>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table border="1"> <tbody>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body> </table>	-----	-----	-----	-----	-----	-----	-----	-----	-----	-----	-----	-----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	-----																										
-----	-----																										
-----	-----																										
-----	-----																										
-----	-----																										
-----	-----																										
<u>&lt;신 설&gt;</u>	<p>(2)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u>&lt;신 설&gt;</u>	<p>(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p>제26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의 사업</li> <li>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li> <li>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li> <li>라. &lt;생 략&gt;</li> </ol> </li> </ol>	<p>제26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 공장건설 등 임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 -----</li> <li>나. -----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li> <li>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li> <li>라. &lt;현행과 같음&gt;</li> </ol>																										

현 행	개 경 안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사. &lt;생 략&gt;</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u>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lt;생 략&gt;</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바. &lt;생 략&gt;</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u>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lt;생 략&gt;</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사. &lt;생 략&gt;</p>	<p>마. 외국인 ----- ----- 바. ~ 사. &lt;현행과 같음&gt; 2. ----- ----- 가. ----- ----- <u>2천만달러미만인 사업</u>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lt;현행과 같음&gt; 라. 외국인 ----- ----- 마.~바. &lt;현행과 같음&gt; 3. ----- ----- 가. ----- ----- <u>1천만달러미만인 사업</u>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 ----- ----- 마.~사. &lt;현행과 같음&gt;</p>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2층 건물을 충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사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충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충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충면적)</p>
<p>3. 3층이상의 건물을 충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사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현	행	개정안
<p><u>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 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u></p>	<p><u>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u></p> <p><u>          ×</u></p> <p><u>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u></p>	
<u>&lt;신설&gt;</u>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u>&lt;신설&gt;</u>		<p>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9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lt;생략&gt;</p> <p>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9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lt;삭제&gt;</p> <p>④ 제1항 및 제2항</p> <p>-----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0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0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생 략&gt;</li> <li>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li> <li>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ol>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외·투법시행령 제13조</u>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li> <li>2. &lt;생 략&gt;</li> <li>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li>4.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u>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li> <li>5. &lt;생 략&gt;</li> </ol> <p>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생 략&gt;</li> <li>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li>3. &lt;생 략&gt;</li> <li>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li> </ol>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현행과 같음&gt;</li> <li>2. ----- 사업----- -----</li> <li>3. ----- 사업장내의 재산</li> </ol> <p>④-----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 ----- -----</li> <li>2. &lt;현행과 같음&gt;</li> <li>3. ----- 사업장내의 재산</li> <li>4. 외국인----- -----</li> <li>5. &lt;현행과 같음&gt;</li> </ol> <p>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현행과 같음&gt;</li> <li>2. ----- 사업장내의 재산</li> <li>3. &lt;현행과 같음&gt;</li> <li>4. ----- 사업장내의 재산</li> </ol>

현 행	개 정 안
〈신설〉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염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읍·면·동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도지사의 심사를 받아 건립하고,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서를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고려하여 -----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시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유관 행정관서 ----- 도모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둘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신설〉	제51조(정의) ----- ----- 공용주택 을 말한다.  제61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한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63조(준용)-----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 “관 인 생 락”

## 경 상 북 도

우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950-2333 / 전송 950-2339  
회계과, 과장 박정균, 사무관 노이수, 담당자 여승동

문서번호 회계 13330 - 855

시행일자 1999. 6. 7 (5년)

(경 유)

수 신 시장, 군수

참 조 회계(재무)과장

선 결	426	7/6/99	지 시
접 수	일자		결 재
	시간		부 12월 14일
	번호	2009	축구경기장 17
처리 과	회계과	공	축구경기장 3000석
담당자	권 대수	람	권 대수 3000석

## 제 목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공기 13330-415('99. 5. 31)호의 이첩입니다.
- '99. 4. 30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아래사항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각 시군은 동 표준안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개정하고
  - 동 표준안은 도 중심의 표준안 이므로 시군에 맞는 자치단체 용어로 바꾸어 개정
  - 동법시행령 제100조제4항 단서, 제5항 및 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새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 바람(필요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현행법규를 적용하여도 무방함)

라.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조례개정시 전부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동조례시행규칙은 상기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개정토록 함. 다만, 영 제10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계약서 서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표준안을 시달할 계획임.

마. 아울러, '98. 8. 25 각 시군에 시달한 동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현재까지 개정공포하지 않은 시군은 이번 시달된 동조례 표준안에 일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완료하기 바랍니다.

붙임 :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2부. 끝.

경상북도지사

전결 회계과장 박정균

寫

○○道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標準(案)

行政自治部

## 목 차

1.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1
2. 신·구조문 대비표 ..... 10

##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 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 3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중 “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체석의"를 "광업체석의"로 하고, 제4항중 "영 제92조제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

적 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 할로 계산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25% + (증가율 - 500%) × 0.005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 3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 .	사용하는 면적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_____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 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도, 시·군·구, 읍·면·동의”를 “당해 도의”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면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증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개정조례 표준(안)

항	명	개정안	사	유
제5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별전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복지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별전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복지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별전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복지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함 ※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재산 등의 위탁은 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가능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가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가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용어설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2. (생략) ② (생략)</p> <p>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의견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낙도의 말 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제신고서 첨부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낙도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li> </ol> <p>〈설〉</p>	<p>○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p> <p>○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p> <p>○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p> <p>○ 중요사항의 범위가 확장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중요사항의 범위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행정법률에 의하여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p> <p>○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를 생략</p>

한	한	개	개	사
한	한	한	한	한
제8조(처분재산의 원 빠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산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사용하는 새로운 재산 로 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저정된 재산의 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 제>	○ 영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		
제11조(관리 및 치분)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제11조(관리 및 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할 경우 우 다른 군지역과 격차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3. 군지역 : 900㎢미만이하 토지 부터이하 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이하 부터이하 토지	○ 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할 경우 우 다른 군지역과 격차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		
4. (생략) ④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블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블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4. (생략) 5. 순회보현증시 제출	1.~4. (현행과 같음) 5. <신·제>	<input type="radio"/>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 불요 <input type="radio"/>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 서 폐지
6. 사용허가표지 부착	6. <신·제>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법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73조제2항과 달공문원은 반드시 해당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제산기 치의 증대와 보존기기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터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input type="radio"/>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 사용허가부의 2 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
제18조(집중재산의 현행파악) ① 전종재산의 현행파악) 재산관리관은 적정한 관리와 청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① 전종재산의 현행파악) 재산관리관은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시점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이사항을 파악토록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도록 함	

한	영	개	정	안	사	부
<p>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도시계획 및 계획발지구의 재산</p> <p>3. 영세 헉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체계문과 대부에 특별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p> <p>2. -----</p> <p>3. -----</p> <p>4. -----</p> <p>5. -----</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 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 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p>○ 풍차제산의 연고권 배제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을 간결화 함</p>
제19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아.	제19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아.	<p>○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p>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자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6. _____ _____인정하는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영 5% 션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영 5% 션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혼령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철거민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함(영 8% → 영5%)</p>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	기 장 안	사 유
〈설설〉	<p>5. <u>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6.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 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②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재산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전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2. <u>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p> <p>3.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③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p>	<p>○ 제2항 제1호 규정을 대체 규정</p> <p>○ 영세민 철거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10년 이내 연 8% ⇒ 10년이내 연 5%)</p> <p>* 제2항 제3호 규정을 대체</p> <p>○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대체 규정됨</p> <p>○ '98. 8.20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5항을 명기'</p> <p>○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대체 규정됨</p>

항	행	기 점 안	사 무
불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 제2호, 제6호 및 제16호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6호 적용자(폐천부지 사용자)와 협약 유지 필요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신설〉	5. <u>군역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파트형공장 설치, 산업 일자 및 기별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기별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절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시장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	○ 개정 전 제22조제8호 규정을 추가('98. 8. 20. 준칙시달시 누락)	
	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짏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불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례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산업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5.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제23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산업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농경지를 설정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식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1.~3. (설명) 1.~3. (설명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 폐지 <input type="checkbox"/>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청수가 아닌 사용료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후청수로 대부료 징수가 없는 경우 대부로 부과가 능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로 부과가 가능하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로 산정방식을 폐지하는것임 <input type="checkbox"/> 제92조제3항 삭제와 관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 -----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이상 필요하게 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영 제92조 제3항 규정에 관한 ⑤ (생략)
⑤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단시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 완화 ⑦ (생략)
⑥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표집건설을 목적으로 표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원천로 계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 외국인 투자법의 확대 ⑨ (현행과 같음) ⑩ -----

항	항	기 개 정 안	시 유
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development 단지 및 벤처기업 창업시설의 초기 임차료 지원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development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창업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 초기 임차료 지원 시설의 초기 임차료 지원 시설의 설치자,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할 수 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98. 9.23)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99. 5. 2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에 의함	유
제23조의 2(내부로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제23조의 2(내부로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내부로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내부로 사용료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내부로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3조의 2(내부로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내부로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내부로 사용료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내부로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유재산내부로의 산정방법은 이전 과세시 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90.11.6)되어 대부분과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관한 특별조치항을 두었음. 이와같은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부제약을 해결하거나 사용허리를 받아 사용하는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동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유

현 금	부 수	개 정 안	사 유
증 가 율	대 부 로 인 상 율		

증 가 율	대 부 로 인 상 율
10%이상	10%+(증가율-10%)×0.3
20%이상	13%+(증가율-20%)×0.1
50%이상	16%+(증가율-50%)×0.06
100%이상	19%+(증가율-100%)×0.03
200%이상	22%+(증가율-200%)×0.01
500%이상	25%+(증가율-500%)×0.005

&lt;신설&gt;

②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혼간의부료 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용료 산입 대로에 비해 현지 차이가 난서 불기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료만지가 없어 2회 이상 경재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로 또는 사용료로의 20퍼센트 보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기점으로 할 수 있다.

-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용료 산입 대로에 비해 현지 차이가 난서 불기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료 산입 대로에 비해 현지 차이가 난서 불기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료만지가 없어 2회 이상 경재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로 또는 사용료로의 20퍼센트 보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기점으로 할 수 있다.
-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로 또는 사용료가 당해 계산법률기준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와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로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lt;신설&gt;

현 황	개 정 안	사 유
<p>제23조의 3(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금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여하는 경우의 임대료·대여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하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성단)</p>	<p>제23조의 3(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p> <p>가. 외국인 투자촉진법</p> <p>나. 19일령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p> <p>라.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용역계약</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법</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법 위반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법 위반 확대</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 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 사. (생략)	마. 외국인 바. ~ 사. (현행과 같음)	○ 용어 중복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2. 75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2.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외국인 투자법의 학제 가. ~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외국인 투자법의 학제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현행과 같음)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 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 바. (생략)	라. 외국인 마. ~ 바. (현행과 같음)	○ 용어 중복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	
3. 50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3.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외국인 투자법의 학제 가. ~ 나. 미만인 사업	

현 행	개 정 안	사 무
<p>나. 고용 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 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 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으로 수출하는 사업</p> <p>마. ~ 사. (생략)</p>	<p>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 대부분로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건물의 대부분의 신출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적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 액으로 한다.</p>	<p>○ 외국인투자법 위 확대 ○ 용어중복 정리(수출지향형과 100명 천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p> <p>1. 건물전체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100%의 건물의 사용자기 준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 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한 제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물이 속한 부 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항	형	개정안	사유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선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내부를 받은자가 사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분한 ×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사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p>	<p>○ 종전 건물 공동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동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임</p>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 용어정리			<p>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문 제	제 1	제 2	제 3	제 4	제 5
3. 3층이상의 건물을 충별로 대보하는 경우 에는 건물평기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보하는 경우 에는 건물평기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기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기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기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기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기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기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기액의 5분의 1	가. 1층은 부지평기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기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기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기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기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기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기액의 5분의 1	4. 건물의 일부를 대보하는 경우에는 대보 를 받은자가 적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현 장	개 정 안	사 유
제26조(대부로 등의 납기) ① ~ ②(생략)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로 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기 하여 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 재·지변 기타 사태로 인하여 특별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충빙서류와 공용 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로 등의 납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삭·재〉  ○ 제23조제2항 개정 관련	<input type="checkbox"/>
제27조(대부로 사용제한) 대부로 수입은 계산 조성비와 계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 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예허거나 따로 정할 수 ---.	제27조(대부로 등의 사용) 계산관리관이 관 리하는 계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 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계산유지관리의 충당제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협약 규정을 청탁



현 황	개 정 안	사 례	유 형
먼지 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첨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첨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제약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 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재산정책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통사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 부동산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 확인이 관련하므로 실현성이 없는 규정 삭제  사용한 ---	
	2. ~ 3. (생략) ④ (생략) ⑤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 가·폐계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도 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준 산업단지동 산 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로 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 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2.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도 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준 산업단지동 산 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로 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 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 건축취소면적에 미달하는 균거법규를 갖 한 부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 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전 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책에 관한 특 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허를 받 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전용 바 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갖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전용면 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접유로 토지로서	3.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4.30이전부 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전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책에 관한 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허를 받한 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전용 바 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갖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전용면 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접유로 토지로서	○ 건축취소면적에 미달하는 균거법규를 갖 한 부

한 형	개 정 안	사 유
<p>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평각법 위반에 서 예약할 수 있다.</p> <p>제39조의 4(예약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기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3. (설악)</p> <p>4. <u>정 조성한 공동체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동용지내의 재산</u></p> <p>② (설악)</p> <p>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p> <p>○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p>	

번 號	개 기 성 안	사 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3.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표찰건설사업 및 동부 대시설내의 재산	----- ----- -----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토크安县의 재산	----- ----- -----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④----- ----- -----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1.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 -----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 4.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토지용지내의 재산	----- ----- ----- -----	
4. 수출조합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외국인 ----- -----	<input type="checkbox"/> 용어충복 정리(수출지향형과 100퍼센트 수출은 같은 의미임)정리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한	영	제	첨	안	사	부
5. (생략) ⑤ (생략) <u>&lt;신설&gt;</u>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감액 미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예산을 보 로 균형당첨률 등을 허거나 예각을 허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력한 조건을 이해 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예산을 확수 한다는 것을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악동기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미각을 한바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 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제45(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 도지사는 도 시·군·구·면·동의 청사건축시 위치 · 규모·개원학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 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체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 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 립토록 함



제 권	제 한	개 정 부 분	시 기 부 분
〈부칙신설〉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료 신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 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개설대분·사유 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료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적용한다.</p>	

(제41회 - 총무 제14차 부록)

회	PAK	4666
날짜	1999. 6. 11	1608

"관 인 생 략"

## 경상북도

주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 전화 950-2333 / 전송 950-2339  
 회계과, 과장 박정규, 사무관 노이수, 담당자 여승동

문서번호 회계 13330 - 874

시행일자 1999. 6. 11 (5년)

(경 유)

수 신 시상, 군수

참 조 회계(재우)과장

선	과장	3666	지	
결	일자	P.P. 6. 11.	시	
집	시간		겸	담당
수	번호	496P	재	3666
처	리과	회계과	공	
담	당자	권오규	람	

### 제 목 공유재산관리조례증정조례표준안증 전정내용 통보

- 행정자치부 공기 13330-435('99. 6. 9)호의 이첩입니다.
- 도 회계 13330-855('99. 6. 7)호로 기 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증정조례 표준안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가. 정정내역

구 분	달 치 안	정 정 안
○ 15p 제19조의2 사용란	○ 행정재산의 얻고권 폐지에 대한 규정 준용으로 내용을 간결화 함	○ 역 제100조제4항 단서신설 관련
○ 33p 제4항제1호 개정 안	○ 일국민로지호전법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 36p 부칙 제2항	○ ----제23조제2항·제6항 한단서, 제9항, 제10항의 (이하생략)	○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이하생략)

나. 당초 표준안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승무하였으니 전산실에서 down 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

## 경상북도지사

전결 회계과장 박정규  
(속)

## 경상북도

인편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 950-2333 / 전송(053) 950-2339  
 세정회계과 과장 : 박정균 사무관 : 노이수 담당자 : 황진대

문서번호 세정 13330-1261  
 시행일자 1999. 9. 1. (3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시장·군수  
 참조 회계·재무(재정)과장

선결	242	26500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9. 9. 1. 14:00	결재	담당 32
	번호	1144		
	처리과	회계과	공	
	담당자	전오기	람	
	심사자		심사일	

## 제 목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표준안 내용 변경

1. 경상북도 회계13330-855('99.6.7)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로 기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표준안 내용중 변경 표준안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아직 개정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조례 개정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당초	변경	사유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생략) ③----- 1.~4.(생략)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u>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이하 생략)</u>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물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현행과 같음) ③----- 1.~4.(현행과 같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u>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이하 생략)</u>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물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구분 한다)으로 한다.	<input checked="" type="radio"/> 동법 제29조 삭제에 따른 <input checked="" type="radio"/> 신탁법감독규정 삭제에 따른 ('99.8.6)

끝.

## 세정회계과장

전결 세정회계과장 박정균

##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73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80조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 <생략>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5.16>

####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 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30>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5.5.16>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⑤〈생략〉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14447, 96.6.29, 98.7.16, 99.4.30>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 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99.4.30>

**제93조 (손해보험계약)** ①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도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 〈생략〉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0.8.8, 90.11.6, 93.9.23, 94.9.29, 98.7.16, 99.4.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제 <90.11.6>

4.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르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21. 삭제 <90.11.6>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 할 때

- 22의2.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 24의2.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8.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 (3) &lt;생략&gt;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② &lt;생략&gt;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99.4.30>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lt;생략&gt;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 ⑤~⑦ &lt;생략&gt;

제102조의4 (잡종재산의 선택) ①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선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합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합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합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합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 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7,

95.12.29 법5091, 96.12.31, 99.2.8〉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파밀리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29조 삭제 <99.2.8>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 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95.12.29>  
②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 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95.12.29>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5.24>

**제1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⑥ <생략>**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⑧~⑨ <생략>**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수익의 기간·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농업진흥지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업조성지역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입법예고결과

- 조례명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00호('99년 10월 25일)에 게재
- 예고기간 : '99년 10월 25일 ~ '99년 11월 13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88호
- 의 안 명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16,267호, '99.4.30)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백히 함.  
(안 제6조)
- 나.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의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 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중 매각용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함  
(안 제23조제4항제5호)

- 라.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를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안 제25조제2항)
-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25조제8항)
- 바.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 사. 시유재산 취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준용규정을 세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63조)

#### 4.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공공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사용을 명백히 함.
- 안 제7조3항(은익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은익 공유재산을 신고 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확인으로 지급토록 함(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 안 제23조제4항제5호 : 잡종재산매각 대금의 분할납부대상중 매각용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개정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 하였음.

- 안 제25조제2항(농경지 대부료)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토록 함.  
(개정전 -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
- 안 제25조제6항 : 단서조항 신설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안 제25조제8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 안 제26조제2항 신설 :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함.
- 안 제26조제3항 신설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1000분의 10)을 적용받은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안 제28조제5호 신설 :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함.
  - 가) 지하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 안 제28조제6호 신설 :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34조의2 신설(신탁의 종류)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신탁의 종류를 정함.
- 안 제63조(준용) 시유재산 취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준용 규정을 세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 4. 30 대통령령 제16276호로 개정되어 '99. 6. 7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 12 . .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